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31149(본소), 2023가단32586(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민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은

변론 종결2024. 5. 29.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412,30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78,86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444,5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3,279,8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C 공장용지 9950.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22. 2. 1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22. 3. 2., 준공예정일: 2022. 6. 19.(공사기간 110일), 계약금액 968,000,000원(공급가액 880,000,000원 + 부가가치세 88,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계약금은 공사계약 이후 계약금액의 20%를 7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공사중 금융권 시설자금으로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1~2회 지급하며, 잔여금은 공사 준공후 1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진척중 견적도면 및 내역서 항목 변경사항 없을시 무정산 기준, 건축물 면적변경, 층수변경, 건축주 변경요청시 정산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원고가 준공기한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지체상금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2. 6.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22. 3. 2.부터 2022. 7.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F동 건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1층 679.05㎡, 1층 130.95㎡, 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과 G동 건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1층 551.5㎡, 1층 78.5㎡, 이하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F동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2022. 8. 3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2. 9. 2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D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건축내역서상 이 사건 G동 건물 중 물품창고의 천장 판넬(270㎡)이 견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원고는 물품창고의 천장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 및 미시공 건물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성토 및 바닥 정지 작업(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22. 9. 5.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468,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2022. 9. 5.경 피고에게 499,400,000원(공급가액 454,000,000원 + 부가가치세 45,4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금으로 청구하면서 특기사항으로 '단 판넬 추가 부분 금액은 추후 확인후 협의하기로 하며, 이외에는 잔여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사. 피고는 2022. 9. 6. 원고에게 합계 499,400,000원(= 258,000,000원 + 41,400,000원 + 100,000,000원 + 49,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22. 9. 19.경 피고에게 판넬공사 및 전기공사 추가공사 청구분을 발송하였고, 2022.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진척중 건축주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면서 2022. 11. 20.까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2022. 12. 28.경에도 피고에게 2023. 1. 10.까지 추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와 이 사건 토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대금 9,603,008원과 이 사건 토공사대금 29,841,506원의 합계금액 39,444,5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의 경우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를 원고가 오시공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대금지급책임이 없고, 이 사건 토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범위를 넘는 추가공사가 없었고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으로 정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건축내역서상 이 사건 G동 건물 중 물품창고의 천장 판넬(270m²)이 견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에는 물품창고의 천정고가 4미터로 표기되어 있고 천장 마감재료표에 'T=50 조립식 판넬(준불연: 나등급)'으로 횡단면도에 THK50샌드위치판넬(난연2급)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G동 건물의 천장 판넬 시공 과정에서 이 부분 시공이 문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시공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의 협의 없이 시공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하자 확인 당시에도 물품창고의 천장 판넬 시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원고가 천장 판넬 시공과 관련하여 추가대금을 청구하자 비로소 피고가 오시공이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에 관하여는 그 대금 지급을 협의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지시 내지 동의하에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대금은 9,603,008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에 따른 대금으로 9,603,0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토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와 미시공 건물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성토 및 바닥 정지 작업을 하였던 사실, ㉡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토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건물과 관련된 터파기, 되메우기 등의 토공사이고, 원고는 위 공사를 포함하여 그 부지 옆의 장래증축 예정구간에도 토공사를 하였던바, 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 감정인은 위 장래증축 예정구간이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에 비하여 낮은 지반이어서 그 성토를 위해 원고 주장의 수량 정도 토사가 이 사건 토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 이 사건 토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부지 옆으로 토사를 옮겨놓아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래증축 예정구간에 성토 및 바닥 정지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정인은 이 사건 토공사대금에 관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원고가 실행한 금액보다 높게 감정평가가 되었다고 하였던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청구한 16,809,300원이 이 사건 토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와도 크게 차이가 있어서 감정인의 산정금액(29,841,506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마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6,809,3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금 정산으로 공사잔여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준공금 정산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내역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정인의 산정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6,412,308원(=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대금 9,603,008원 + 이 사건 토공사대금 16,809,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G동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천장 판넬 공사를 함으로써 이를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오시공으로 인한 손해액 9,152,9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상액 9,278,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인 2022. 6.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2022. 8. 30.경 사용승인이 있었던바, 원고는 그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체상금 34,848,000원(= 공사대금 968,000,000원 × 5/1000 × 72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G동 건물 중 물품창고의 천장 부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판넬공사는 피고의 지시 내지 동의하에 이루어진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G동 건물 중 물품창고 천장에 오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1 내지 3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결과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은 합계 9,278,861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F동 건물
1
2
3
4
5
6
바닥 균열 0.3mm이상
이질재 접합부
7
8
9
이 사건 G동 건물
10
11
12
13
14
15
합계

라.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22. 8. 30. 사용승인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2. 6.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22. 3. 2.부터 2022. 7.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7. 11.경 감리건축사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서류 일부를 송부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22. 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보일러실 및 걸레받이 뉴크리트 포함하여 보완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재점검 후 사용승인 접수 요청을 하였던바, 점검 및 보완기간을 감안하면, 변경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고 2022. 8. 12.까지 원고가 부분시공 및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과는 관련 없는 부분인바, 그렇다면 2022. 7. 30.경에는 이미 이 사건 각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관한 예정된 공정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정의 일부를 직접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예정일인 2022. 7. 30.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9,278,861원 중 피고가 구하는 9,278,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 1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영